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종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87
----------	------

발의연월일: 2022. 7. 27.

발 의 자: 전종균 의원

찬 성 자: 이영심, 고용필, 박성근,
남연희, 박영희, 이현숙,
오천수, 양옥희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 다.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안 제5조~안 제6조)
- 라. 사회적 고립 청년발굴(안 제7조)
- 마. 지원사업(안 제8조)
-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안 제9조)
- 사.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 나. 협조부서: 아동청년과
-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라. 입법예고(2022년 8월 17일~2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으로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

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자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성동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 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 6.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